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85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김승수·김예지・임이자

우재준 · 성일종 · 박충권

주호영 · 신성범 · 서지영

박성훈 • 박성민 • 강선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정을 바탕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등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전담여행사로 하여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규모가 증가하며 전담여행사 제도가 여행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의 실효성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과 관련 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관광객 유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 담하는 여행업자(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를 지정·관리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고의나 공모에 의해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 4. 그 밖에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여행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지정취소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여행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는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 라 지정된 전담여행사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 · 협정 등이체결되어 있는 경우 관광객 유치 등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여행업자(이하 "전담여행사"라한다)를 지정 ·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여행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 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 3. 고의나 공모에 의해 관광객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 4. 그 밖에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전담여행사로서 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 ·갱신·지정취소 및 전담여행 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